

조문별 개정이유서

1.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의무 강화 (안 제9의2 및 별지 제1호의15)

가. 제·개정 이유

- 현행 규정상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미흡한 소독설비나 방역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미흡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하는 사례가 있는 등 개선 필요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의2

나. 제·개정 내용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조치 후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 및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확인 후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여 계약사육농가의 방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임차한 차량의 시설출입차량 등록 의무 부여 (안 별표 2의2)

가. 제·개정 이유

-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승합차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농장을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나. 제·개정 내용

-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임차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도록 함
- * 농장외부 주차시설에 주차하거나 농장내로 통하는 별도 출입구를 가진 주차시설에 주차하는 차량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부득이 농장내로 일시적 진입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 받고 진입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가축의 소유자등이 소유·임차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시설출입차량의 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차량을 통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3.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 강화 (별표 2의4 개정)

가. 제 · 개정 이유

- '20/'21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분석을 통해 가축 소유자등의 방역기준을 보완할 필요

※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나. 제 · 개정 내용

- 가금 사육시설과 연결된 알·분뇨 운송벨트와 벨트 주변에 야생동물 접근 방지하고, 주변 바닥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명확한 방역 기준을 설정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을 강화하여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높여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